

제2021-26호

발전사업 허가증

1. 성명(대표자) : [] / 생년월일 : []
2. 상호 : 태백가덕산풍력발전(주) / 법인번호 : []
3. 소재지 : 강원도 태백시 []
(전화 : [])
4. 사업의 내용 : 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
○ 사업장소 : 강원도 태백시 []
5. 사업규모
○ 원동력의 종류 : 풍력
○ 설비용량 : 21MW, 공급전압 : 345kV, 주파수 : 60Hz
6. 사업준비기간 : 2022년 12월 까지
7. 기타
 - ① 발전사업(제2018-104호) 일부 양수(제2020-50호) : 태백 가덕산풍력 발전 사업으로부터 설비용량 28.8MW('20.5.26)
 - ② 사업준비기간 연장 : 2020년 12월 → 2022년 12월('20.10.7)
 - ③ 양수인가 : 한국동서발전(주) → 태백가덕산 []
 - ④ 대표자 변경 : []
 - ⑤ 용량 변경 : 28.8MW → 21MW('21.12.21)

※ 주의사항 : 전기사업법 제9조(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), 제10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·합병 등)를 위반할 경우 제12조(사업허가의 취소 등)에 따라 처리

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
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.

2021년 12월 21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



태 백 시



수신 [REDACTED]
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 변경허가 알림

1. 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.
2. 태백시 [REDACTED] 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허가내용, 허가조건 및 각종 협의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발행위 변경허가 내용

구 분	허가사항		비고
	당초	변경	
수허가자	태백가덕산공력발전(주)	태백가덕산공력발전(주)	
개발행위 목적	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	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	
개발행위 허가대상	[REDACTED]	[REDACTED]	
위치 (지번,지목,면적)	[REDACTED]	[REDACTED]	지적분할
개발행위 허가면적	[REDACTED]	[REDACTED]	공사계획 변경
개발행위 사업기간	2020. 12. 29. ~ 2023. 4. 30.	2020. 12. 29. ~ 2023. 4. 30.	기간연장
개발행위 이행보증금	3 [REDACTED]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에 의거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제외한 금액	3 [REDACTED]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에 의거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제외한 금액	공사계획 변경
용도지역	농림지역, 보전관리지역	농림지역, 보전관리지역	

나. 개발행위 변경허가 조건

- 당초 협의-허가 조건과 같음. 단, **개발행위이행보증금 변경 제출**
- 산지전용 관련 협의의견 이행 철저

붙임 1.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분야 협의 의견 1부. 끝.